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63
------	------

2021. 04. 2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02월 05일, 김혜련 의원(찬성자 11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4.2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혜련 의원)

1. 제안이유

-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소비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할인 구매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명한 소비가 되고 있음.
-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과정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각종 결제정보를 제출할 의무화가 필요하고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갖고 있는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등의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제출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제3항).
- 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맹점과 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2019.12.31.)된 제로페이 연계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운영대행사로 하여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임.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할인을 확대, 캐시백 등의 혜택을 부여한 결과, 상품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당초 2천억원 발행 계획에서 5차례의 추가 발행을 통해 5,510억원을 판매하였음.

< 2020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

(단위: 백만원)

2020 발행규모	당초예산 (1.10~5.19.)			2회 추경 (5.20~7.12)	3회 추경 (7.13~7.27)	4회 추경 (9.16~12.31)	
	당초 발행규모	1차 추가발행	2차 추가발행	3차 추가발행	4차 추가발행	5차 추가발행	
551,000	179,000	13,000	8,000	39,500	179,000	125,000	7,500

- 올해에는 8,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상반기 발행액 3,900억원 중 현재 24개 자치구¹⁾에서 3,749억원이 판매되었음.

< 2021년도 서울사랑상품권 예산 및 발행규모 >

(기준: 2021. 4. 20. 단위: 백만원)

구 분	연간 발행규모	상반기 발행액	판매액
상품권 발행규모	810,000	390,000	374,939

1) 25개 자치구 중 중구는 4월 말 40억원 발행할 예정

다. 가맹점·사용자의 결제정보 등 제출(안 제8조제3항)

- 개정안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현 행	개정안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는 빅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제로페이 이용자의 지역별·업종별 구매패턴과 취향 등에 대한 상권분석과 고객관계관리(CRM)²⁾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있음.
- 현재 상품권 사용자는 비플제로페이 등 16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사전동의 후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고 있으며 제3자 제공 또는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³⁾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게

2)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분석·통합해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용을 계획·지원·평가하는 관리체계를 말함.

사용자의 상품권 구입과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3자인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 사용자의 상품권 구매·결제정보는 통계자료 활용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할 것임.

라.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운영대행사 운영과 지도·감독 등을 위해 위원회를 두고, 안 제13조는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 안 제14조는 위원장(상품권 업무의 소관 실·국장)의 직무를, 안 제15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토록 하였음.
 - 안 제16조는 위원회 운영, 안 제1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18조는 위원수당 등 위원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 사항을 규정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별 할인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품권의 사용(판매와 환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제19조)

하고 있음.

- 지역화폐 전문가와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상품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품권 유통기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6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혜련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고병국, 권순선,
김제리, 김화숙, 송도호,
송아량, 우형찬, 이광호,
이병도, 이정인 의원(11명)

1. 제안이유

-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소비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할인 구매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명한 소비가 되고 있음.
-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과정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각종 결제정보를 제출할 의무화가 필요하고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갖고 있는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등의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제출하는 사항을 명시함 (안 제8조제3항).
- 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회수량등을”를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를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운영대행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원
2.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3.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u>회수량</u>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u>회수량</u>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12조(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u>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u> 2. <u>운영대행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신 설></u></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u></p>

현행	개정안
	<p><u>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서울시의회 의원</u> <u>2.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u> <u>3.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신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u></p> <p><신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u> <u>2. 위원이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이 된다.</p>
<p><u><신설></u></p>	<p>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除斥) 된다.</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u>제12조(시행규칙)</u>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3조(환수 조치)</u>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u>제14조(과태료)</u>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u>제19조(시행규칙)</u>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20조(환수 조치)</u>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u>제21조(과태료)</u>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문서번호

2021020300000018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혜련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2.03

회신일 : 2021.02.04

내용문의 : 02-2180-7943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12조(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9,300천원(연평균 3,8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8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11명(소관국장 1명, 소관담당관 1명, 시의원 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9,300천원(연평균 3,86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제12조)		3,860	3,860	3,860	3,860	3,860	19,300
	소계(b)		3,860	3,860	3,860	3,860	3,860	19,300
□ 총 비용(b-a)			3,860	3,860	3,860	3,860	3,860	19,300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16,000천원+업무추진경비 3,300천원=19,3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200천원×8명×연 2회×5년=16,000천원
 - ※ 참석수당 단가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 지급인원 : 위원 11명 중 시의원(1명) 및 소관국장(1명), 소관담당관(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11명×연 2회×5년=3,300천원
-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